

광주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가단5261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심형섭

피고B

변론 종결2024. 4. 12.

판결 선고2024. 5. 10.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1.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22. 11. 23. 접수 제155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의 관계 등

피고는 C의 동생이고, C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D에 2019. 11. 1.경 2억 원을, 2020. 6. 19.경 2억 원을, 2021. 3. 22.경 7,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C는 D의 위 각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단, C의 보증한도액은 위 각 대여금의 순서대로 각 1억 2,000만 원, 2억 2,000만 원, 7,700만 원이다.

다. C의 부동산 처분행위

C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22. 11. 23. 접수 제15549호로 2022. 11. 16.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기초사실 나.항에서 인정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연대보증채권은 기초사실 다.항에서 인정한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 2, 7, 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단법인 E,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정보시스템운영과에 대한 신용정보 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에 대한 각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로 보이는 2022. 11. 16.경 C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제외하고 659,700,000원 상당의 적극재산과 864,976,187원 이상의 소극재산을 갖고

있음이 인정되는데, C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에 따라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거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의 책임재산이 더욱 감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C의 재산상태와 C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1	광주 서구 F건물, G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1.13㎡	131,700,000
2	나주시 H건물 I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4.7㎡	124,000,000
3	나주시 J건물 K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00.80㎡	212,000,000
4	나주시 J건물 L호 철근콘크리트구조 93.155㎡	192,000,000
5	별지 기재 부동산	불명
합계		659,700,000

1	원고에 대한 대여금 연대보증채무 합계액	333,376,187
2	적극재산 순번 1 부동산에 설정된 M조합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채권최고액)	93,600,000
3	N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적극재산 순번 2 부동산 관련)	90,000,000
4	적극재산 순번 3, 4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A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채권최고액)	228,000,000
5	적극재산 순번 3, 4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O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채권최고액)	120,000,000
합계		864,976,187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22. 11. 23. 접수 제155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두희

별지